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12.8.23]
[법률 제11358호, 2012.2.22,
일부개정]



【제 · 개정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전단 중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5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⑩ 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9조제12항”을 각각 “제9조제13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축산물의 재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를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임무”를 “임무, 기준 업무량”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제11항”으로, “제13조제2항·제3항”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축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

| 축산법령 |

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축산물의 수거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식품위생법과 균형을 맞춘 축산물의 재검사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재검사 절차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시·도지사로서 하

여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0항·제11항·제12항·제15항).

나. 축산물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제2항·제3항).

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책임수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적정 인원의 책임수의사를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2012.5.23] [법률 제11100호, 2011.11.22, 일부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2012.8.23] [법률 제11358호, 2012.2.22, 일부개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①(생략)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①(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_____ _____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라한다) _____.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_____ _____ _____.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항및제11항에따른출입·조사·평가를거부·방해·기피한경우	5. _____제12항에따른_____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⑦ 농림수산물부 장관,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2항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의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⑦ _____ _____ _____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_____ _____ _____.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 할 수 있으며, 그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⑩ _____ _____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_____ _____ 연1회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_____.

| 축산법령 |

<p>⑪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⑪ 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⑫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⑫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 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5.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p>	<p>⑬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 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5. 제12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p>
	<p>⑮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설치등) ①~③(생략)</p>	<p>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설치등)①~③(현행과같음)</p>
<p>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p>	<p>④ _____.</p>
<p>1. 제9조제12항에 따라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포함한다)</p>	<p>1. 제9조제13항_____</p>
<p>2. 제9조제12항에 따라할 수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조사·평가</p>	<p>2. 제9조제13항_____</p>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검사에대한이의신청) ①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가공기중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영업자에게 그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축산물의재검사)①———— ————제12조,제15조제2항및제19조———— ———— ———— ————
② 제1항에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②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검사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다른 재검사요청을 받은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관과책임수의사)①~③(생략)	제13조(검사관과책임수의사)①~③(현행과같음)
④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허가)①·②(생략)	제22조(영업의허가)①·②(현행과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할 수 없다.	③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p>제27조(허가의취소등)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영업의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명하거나, 영업소폐쇄(제24조에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제27조(허가의취소등)①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1. 제4조제5항·제6항,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3항,제8조제2항,제9조제2항,제10조,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제13조제2항·제3항,제14조제2항,제15조제1항·제3항,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1조제1항,제22조제5항,제24조제2항,제25조,제29조제2항·제3항,제30조제5항·제6항,제31조,제31조의2제1항·제2항,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또는제34조를위반한경우</p>	<p>1. _____</p> <p>_____제9조제2항·제11항_____</p> <p>_____제13조제2항부터제4항까지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2. ~ 6. (생략)</p>	<p>2.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⑤ (생략)</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33조의2(위해평가)①~④(생략)</p>	<p>제33조의2(위해평가)①~④(현행과 같음)</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